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회사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출서류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② (생략)  <u>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제안자가 해당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u>            ④ ~ ⑥ (생략)</p> <p>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②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            -----            -----            -----  <u>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u>            -----            -----            -----.</p>

1. ~ 6. (생략)

<신설>

<신설>

1. ~ 6. (현행과 같음)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회사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연 락 처	(02) 2110- 8302